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연월일	2021. 11. .
발 의 자	장미경 의원 외 5명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미경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1. 11. .

발 의 자 : 장미경 · 강승수 · 김영길
김춘남 · 안주찬 · 양진오 의원
(6인)

1. 제안이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어 최저 보험료가 변경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지원 대상 기준을 개정하여 저소득 시민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여 의료복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나. 지원대상(안 제3조)

(현행)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0,000원 미만인 가구

(변경)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가구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붙임)

다. 기 타 : 해당 사항 없음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0,000원 미만”을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0,000원
미만”을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저소득계층”이란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u>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0,000원 미만인</u> 가구를 말한다.	1. ----- ----- ----- <u>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u>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보험공단”이라 한다) 구미시 지역가입자이며 <u>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0,000원 미만</u> 가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 ----- ----- ----- <u>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u>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할 때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은 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 및 하한을 정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및 하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라 한다)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나.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천분의 80 이상 1천분의 85 미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나.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천분의 60 이상 1천분의 65 미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지원 기준 변경될 시, 지원 세대가 증가하여 재정수반요인(시비 추가 부담금)발생 (안 제2조, 제3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최근 3개년 보험료 평균 인상률(3.19%)을 반영하여 지원세대 및 금액 산정
- 보험료 인상률에 따라 금액 변동(증액) 가능
- 경상북도 조례 개정 계획이 없어 도비 매칭 금액은 추계 어려움

※ 도비 추계금액 : '22년도 가내시 금액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천 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도 비	90,000	90,000	90,000	90,000	90,000	450,000
시 비	390,000	404,484	420,252	436,524	453,324	2,104,584
합 계	480,000	494,484	510,252	526,524	543,324	2,554,584

4. 재원조달 방안

(단위:천 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 비	-	-	-	-	-	-
도 비	90,000	90,000	90,000	90,000	90,000	450,000
시 비	390,000	404,484	420,252	436,524	453,324	2,104,584
합 계	480,000	494,484	510,252	526,524	543,324	2,554,584

5. 부대의견

- 경상북도 조례 개정 계획이 없으므로 시 조례 개정시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 예산은 전액 시비 부담

6. 작성자 : 생활안정과 지방행정서기 김민지(054-480-2754)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조례 개정시 월 소요 예산

단위(세대, 천원)

연도	지원범 위	합계		노인		장애인		한부모		만성질환		비고
		세대	금액	세대	금액	세대	금액	세대	금액	세대	금액	
'21	1만원 미만	1,611	10,432	1,288	8,136	210	1,439	20	161	93	696	21.1 기준
	최 저 보험료 (16,030원)	3,991	38,697	2,623	23,973	660	6,961	256	2,879	452	4,884	
'22	최 저 보험료 (16,540원)	4,118	39,931	2,707	24,737	681	7,183	264	2,971	466	5,040	
'23	최 저 보험료 (17,060원)	4,251	41,207	2,794	25,527	703	7,413	273	3,066	481	5,201	
'24	최 저 보험료 (17,610원)	4,388	42,521	2,883	26,341	726	7,649	282	3,164	497	5,367	
'25	최 저 보험료 (18,170원)	4,528	43,877	2,975	27,181	749	7,893	291	3,265	513	5,538	
'26	최 저 보험료 (18,750원)	4,672	45,277	3,070	28,048	773	8,145	300	3,369	529	5,715	

※ 최저보험료 : 최근3개년 평균인상률(3.19%)을 통한 예상 금액

※ '21년도 최저보험료(16,030원 / 건강보험료 14,380원, 장기요양 1,650원)

※ 연 소요예산(익년도)

- 2022년도 가내시 반영 예산 : 180백만원(도 90백만원, 시 90백만원)

- 월39,931천원 × 12개월 = 연480백만원 정도(도 90백만원, 시 390백만원)

⇒ 시비 추가 부담액 : 300백만원